

양심의 자유와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연구

송하영*

요 약

본 연구는 병역제도와 관련하여 병역의무의 비리 척결(剔抉)을 위해서 대체복무/전환복무자 등 병역자원관리의 체계적 정비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현실에 비추어 다원화되어 있는 징집구조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한다면, 병역자원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병무청이 중심이 되는 병역자원관리의 일원화는 병역자원의 체계적 관리로 병역자원 판단, 계획수립의 효율성·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서 대체복무/전환복무자간 자원관리의 일관성 유지로 자원별 복무지침 등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원인 등 접근성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실현될 수 있으며, 병무의 일원화도 실현됨으로써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한 형평성이 제고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역주체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의 일원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제어: 헌법, 기본권, 양심의 자유, 징총거부, 대체복무

Abstract

In this study, in light of the reality that the need for systematic development of military service resource management and alternative service discipline / switching service discipline has been discussed for illegal liquidation of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Tekketsu) in connection with the military service system, and pluralistic it is assumed judgment if centralized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MA) the recruitment structure that is, military service resource management that to effectively manage. Military service resources decision to systematic management of resources military service, military service of centralized resource management that MMA is the center, the efficiency of the plan. It is determined that it can improve the precision, thereby increasing and the resource-specific Service Discipline instruction, fairness to ensure consistency in the resource management of Alternate Service Discipline / Switching Service Discipline among, high quality and accessibility of such people petition I thought there may be a service provider is realized, that centralization of MMA is also realized, trying to allo improved fairness associated with the performance of military service oblig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we are exploring a scheme that is able to achieve the unification of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of military service entity to perform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key word: 헌법(Constitution), 기본권(fundamental rights), 양심의 자유(freedom of conscience), 징총거부(refuse of manual exercise), 대체복무(conscientious objectors to do alternative service)

*제1저자 :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수로

•투고일 : 2014. 6. 30. 심사일 : 2014. 7. 30. 게재확정일 : 2014. 8. 30.

I. 들어가는 말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일 밤 충북 증평군의 제13공수 특전여단 예하 부대 훈련장에서 포로 체험 훈련을 하던 특전사 대원 10명 가운데 하사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훈련은 특전사 대원들이 적(敵)의 포로가 된 상황을 가정해 몸을 움직일 수 없도록 포박(捕縛)하고 두건을 씌운 상태에서 한 시간 이상 킁킁한 독방에 밀어 넣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포심 등을 견디도록 계획된 것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두건 용도로 시중에서 구입한 주머니가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섬유 재질이었던 데다 목 끈마저 조여 놓는 바람에 대원들이 질식사(死)하고 말았다.

특전사는 군 최정예 부대다. 최고 전투력을 갖추기 위해 극한까지 가는 실전 같은 훈련을 거듭해왔을 것이다. 그런 부대원들이 훈련 과정의 실책으로 어이없게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소식에 착잡하기만 하다. 숨진 병사들에겐 특별한 예우를 해줘야 한다.

고문(拷問) 등 극한 상황을 견뎌내기 위한 포로 체험 훈련은 특전사가 올해 처음 도입해 오는 15일 본훈련을 앞두고 예행연습을 하던 과정이었다고 한다. 강하고 용맹(勇猛)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내력의 한계까지 가는 훈련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훈련 교관들이 독방에 갇힌 대원들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소리를 질러대는데도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다. 고(高)위험도의 훈련을 치를 때는 의료 요원과 앰블런스 등을 대기시킨 상태에서 병사들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가며 더 과학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민은 올 들어 GOP 총기 난사 사건,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 4성(星) 장군 추태 전역에 이어 다시 훈련 중 사망이라는 믿기 어려운 소식에 접하면서 우리 군에 지금 뭔가 큰 구멍이 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 군의 비정상(非正常) 상황을 더 이상 덮고 지켜볼 게 아니라 군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훑어보는 체계적인 진단을 해봐야 할 때다*.

최근 연예인 등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사태에 즈음하여, 대표적인 사례로 A모씨의 경우가 그렇다. 서울고등법원은 A모씨측의 현역 입영 집행정지 처분으로 병무청이 지난 2007년 8월 8일 제출한 항고에 대해 2007년 12월 15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모씨측과 병무청의 행정소송은 12월 15일까지 재판이 끝나야 하고 A모씨의 군 입영 여부는 적어도 12월 15일에 확정된다.

한편 A모씨는 비지정 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의 대체복무 근무 편입 취소 처분을 통보받았고, 8월6일 오후 1시 충남 논산훈련소로 입소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 조선일보 2014.09.04 참조.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A모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입대 집행정지 신청에 “A모씨와 병무청의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현역

또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지난 몇 년간 의무사관(군의관) 후보생으로 지원했다가 질병 등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 받은 의사 수십 명의 자료를 최근 국방부로부터 받아 수사 중이라고 2007년 8월 2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은 “국방부가 병역비리 의혹이 있는 의사 수십 명의 명단과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와 기초적인 확인작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군 검찰단과 협조해 이 의사들이 군의관 후보생으로 등록했다가 나중에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거짓 또는 위조 진단서를 제출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혐의가 포착되는 대로 해당 의사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첫 신체검사 때 병역적합 판정을 받았다가 뒤늦게 질병 관련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면제받은 군의관 후보생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의사들의 명단을 추려 검찰에 제출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우리 병역법이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병무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사각지대의 그늘이 있었다는 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병무행정의 일원화’라는 연구를 통해 사각지대를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즉, 대체복무 및 전환복무제도에 대한 허술한 관리 및 주무관청의 일원화가 안되어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병

역의무에 대한 일원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산재되어 있는 선병(選兵)제도의 일원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선병의 주도권을 병무청으로 일원화하여, 병무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러한 병무청의 선병 절차를 통하여 징집을 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기관의 병역의무이행에 대해서는 병무청이 감독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면 병역의 형평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리라 생각된다.

오늘날 안보개념은 전통적인 군사력 중심에서 정치, 경제, 사회, 환경적 요인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안보 패러다임의 확대가 가져온 군사적 물리력의 위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은 최종적인 국가안보수단이라는 국가 안보상의 핵심적 위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평시에 군사력의 안정적 유지와 발전을 위한 노력은 단 한번의 사용 또는 영원히 사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국가의 존속을 담보하기 위한 중차대한 국가작용인 것이다. 군사력은 무기, 장비, 시설 등 물적 요소와 이를 운영하는 병력인 인적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병역이란 이러한 국방력 구성에 필요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한 국민의 인적 부담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 등이 병역제도이다. 이와 같은 안보와 국방력의 거시적 맥락에서 볼 때, 특정국가의 병역제도에 대한 유지 및 개선과 관련된 병역정책의 설정 문제는 일차적으로 국방력을 건설하는 과정과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덧붙여 한국과 같이 국민개병주의에 의한 국방 의무로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병역문제는 단지 국방 및 군

입대 정지”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병무청이 항고하자 서울 고등법원은 행정법원과 의견을 같이 해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다.

사력 건설의 관점에서만 설정되기 곤란하다*. 따라서 병역정책은 변화하는 군사력 건설 목표에 부합되는 수준의 병역충원이 라는 군사적 요구를 일차적 고려 대상으로 해야 함은 물론 국민의 병역제도에 대한 변화 요구, 국가인적자원으로서 젊은 청년 인력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활용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병 복무기간 단축이 제시되었으며, 추가복무기간단축에 대한 요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 경제 산업계, 교육계, 예체능계 등 사회로부터 국가인적자원으로서 병역자원의 활용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사회일부에서 현 안보상황을 낙관하여 병역 자원활용의 효율성측면에서 지원제도의 전환과 대체복무제도의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들은 나름대로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2. 양심의 자유와 대체복무

양심의 자유는 근대인권선언의 중심을 이루는 권리의 하나이고, 특히 양심의 자유는 구미제국에서 신교의 자유와 불가분한 것으로서 주장되었다. 미국에서는 합중국 헌법성립 이전의 각지방의 제헌법 중 1776

년 버지니아헌법이 “모든 인간은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라서 자유롭게 종교를 믿을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제16조)고 규정한 것을 시발로 기타의 제헌법에서도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었는데, 1788년 합중국헌법에서는 1791년의 수정 제1조의 신교의 자유보장조항 속에 양심의 자유가 흡수되게 되었다. 유럽에서는 우선 1789년 프랑스인 권선언에서 “누구도 그 의견의 표명이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예컨대 종교상의 것이라도 그 의견에 관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제10조),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전달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제11조)라고 규정되고, 프랑스에서는 양심의 자유는 신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와 밀접불가분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1919년 Weimar헌법에서 ‘신앙 및 양심의 완전한 자유’(제135조)가 보장되고, 더 나아가 현행 독일기본법에서는 ‘신앙, 양심의 자유와 함께 종교 및 세계관의 고백의 자유는 불가침이다’(제4조 제1항)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양심의 자유가 독자의 조항에서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 있어서 명치헌법에서는 사상·양심의 자유를 특별히 보장했던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상의 자유의 보장은 1945년 7월

* 이는 병역의무 자체가 국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일정기간 강제복무를 필요로 하는 부담행정작용이라는 특성과 더불어 청년기의 모든 국민을 관리 및 활용하는 국가인적자원관리의 특성을 갖는다는 사실로부터 파생된다.

** 김중구, 한국 병역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면 참조.

*** 프랑스의 대표적인 기본적 인권의 체계서인 J. Rivero, Les libertes publiques, t.2, 1980, 2ed., p.131에서 ‘사상의 자유’(liberte de la pensee) 속에서 어떤 영역이라도 진실을 선택할 자유인 ‘의견의 자유’(liberte d’opinion)와 윤리 및 종교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대상으로 한 ‘양심의 자유’(liberte de conscience)가 포함되는 점, 또 사상의 외부적 표명 및 전달에 신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교육의 자유 등이 대응하는 것이 명백하게 되어 있다.

26일에 서명된 포츠담선언 속에서 ‘언론, 종교 및 사상의 자유와 함께 기본적인 권리의 존중은 확립된 것’(제10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본헌법에서는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이것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제19조)라고 하여 사상·양심의 자유가 독자의 조문으로 보장된 것이다. 일본헌법에서 사상·양심의 자유를 명기한 것은 ‘종래 일본에서는 천황이 정치적 세계에서 절대적 권위였던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도덕적 세계에 있어서도 절대적 권위를 가진다고 생각되고, 인간의 내심에 대해서도 강한 영향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이와 같은 천황의 정신적·도덕적 권위를 부정하는 바에 특별한 의의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양심의 자유는 처음에는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 보았으나(Preußen), 근대 일본, 바이마르헌법에서 독립되어 규정하였다. 우리 헌법도 제헌헌법에서 신앙과 양심을 한 조문에서 다루었으나 제3공화국헌법부터 신앙과 양심을 분리하여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양심의 자유를 기초로 양심상의 결정에 의해 군복무를 거부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종교의 자유에서와 마찬가지로 제기된다. 우리나라 판례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상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한 행위는 응당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며, 양심상의 결정은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부정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에 ‘행동의 자유’까지 포함시킨다면 納稅拒否 등과 같이 실정법상 의무를 부정

하는 것을 용인해야 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통설). 그러나 미국·영국과 독일에서는 집총이나 전투에 종사하는 것을 자기 양심에 반한다고 하여 거부할 때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병역을 면제해 주거나 代替役務를 과하는 제도가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대체역무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적합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徵兵制度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를 조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과제이다. 이하에서는 외국의 대체복무제도에 대하여 상론하기로 한다.

II. 외국의 병역대체복무제도 실태

** 獨逸基本法은 “누구도 양심에 반하여 執銃兵役을 강제받지 아니한다...”(제4조 3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美國에서도 일반병역법 제6조 8항은 “종교상의 교육 및 신념에 따라 모든 형태의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양심상 반대하는 자는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의 여타 세계 30여개국도 良心的 反戰權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입법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양심적 반전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는 전쟁 일반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판례(*Gillette v. United States*, 401 U.S. 437 (1971))는 전쟁 일반이 아니고 월남전쟁과 같은 특정의 전쟁만을 반대하는 자에게 양심적 반전권을 부인하였으며,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도 “특정한 전쟁, 특정한 방식, 특정한 무기로 하는 전쟁을 거부하는 상황조건부 병역거부는 헌법 제4조 제3항에서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있다.

* 대판 1995. 12. 21. 95 도 894; 대판 1992. 9. 14. 92 도 1534; 대판 1976. 4. 27. 75 누 249; 대판 1969. 7. 22. 69 도 934.

*** 김효전,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 한상범 편, 세미나 헌법학(고시원, 1981), 277면.

1. 대만

대만은 중국과의 긴장관계로 인해 국민계병제하에 징모혼합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교 및 하사관 충원은 징병과 모병을 병용하는데 반해 병 충원은 징병에만 의존하고 있다. 2000년도에 병역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현역병 및 예비역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체대역(대체복무)을 신설하였으며, 보충역 편입 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상비병역(현역)의 징집입영 복무기간이 종전 육군 2년, 해·공군 2년이 군에 관계없이 1년 8개월로 단축되었으며, 예비역 복무기간 역시 종전 45세에서 40세로 단축되었다. 보충역 편입 범위 확대는 국가 체육특기자, 생계곤란자 및 대체역 판정자중 미 복무자를 새로이 보충역 편입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잉여자원의 해소를 도모하고 있고, 그 외에 수형자에 대한 병역면제 대상 폭을 확대함으로써 잉여자원의 증가를 억제하려고 하고 있다.

2000년 도입된 대만의 대체복무제도인 체대역은 우리나라 초기의 병역특례지도와 같이 잉여자원 해소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자원획득이나 운영측면에서 유사한 점

이 많다. i) 상비병역(현역) 판정을 받은 자가 체대역복무를 지원하여 체대역에 편입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2년 2개월을 복무하고, ii) 국가고시 합격자나 사회치안 전문자격 보유자 등과 가정사유 해당자는 체대역으로 분류되어 1년 8개월 복무하며, iii) 종교적 이유로 인한 징집입영 거부자로서 체대역으로 분류된 자는 2년 2개월을 복무한다.<표-25>

대체복무제도 실시 후 지금까지 모두 25기에 걸쳐 총 43,712명이 대체복무대상자로 입대하였다. 이들은 경찰역(교정역 포함), 소방역, 사회역, 환경보호역, 의료역, 교육복무역, 건설역, 사법행정역, 토지측량역, 외교역, 경제안전역 분야 등에서 복무한다. 종교적 요인으로 대체복무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97명이며, 심사결과 이중 94명이 종교적 이유로 대체복무를 인정받아 군사훈련을 면제받는 대신에 현역에 비해 긴 기간동안 복무하였다(2005. 5. 20.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수립원인). 가정사유 체대역 이외의 자는 원칙적으로 합숙(내무생활)근무한다.

대만의 대체복무 전환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요건과 복무기간에서 차이가 나며, 현역충원에 지

<표-25> 대만의 역종별 의무복무기간

역상	종비역	의무복무기간	전역(복무)후	
			예비역	40세
보충병역	육군	3~6월	예비역	40세
	타군 및 특종병	3~12월		
국민병역	기초국민병역	군사예비교육	국민병역	40세
	갑종국민병역	1~3월(군사훈련)		
	을종국민병역	1월(군사훈련)		
체대역	상비병역판정자	2년 2월	예비역	40세
	체대역판정자	1년 8월		
	징집입영거부자	2년 2월		

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 선발한다. 시행초기와는 달리 대체복무가 어렵다는 것이 알려져 지원자가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해당 종교에 2년 이상 속해 있었어야 하며, 심리적으로 현역 상비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 또한 선정시 합법적으로 등록된 종교단체로부터 발행받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2. 독일

독일의 병역제도는 징집제를 기반으로 임기복무지원병, 직업군인 등의 지원제를 혼용하고 있다. 독일의 현재 현역 복무기간은 9개월인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지원에 의해 3~14개월 연장복무도 가능하다. 또한 의무복무기간 중 대학, 직업학교 등에 입학하는 경우 군 복무를 일시 중단하고 학업을 마친 후 다시 입영하여 잔여기간을 복무하는 분할복무도 가능하다.

* 가정에 중대한 상해, 질병자나 장애인이 있을 때 돌볼 사람이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마땅치 않은 경우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평화주의 관점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일반인 경우엔 대체복무가 필요한 각종 기관에서 지정한 국가고시 합격증명, 중앙주관기관에서 발행한 전문기술 증명과 그와 관련된 학력경력이 있거나, 전공훈련을 받으면 대체복무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나 그와 관련된 일을 한지 만 1년이 되고, 봉사한 시간이 150시간 이상이 될 경우 자원봉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요건이 구비된다. 이러한 자격이 없는 일반인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체복무신청 시에는 신청 이유서, 자서전, 서약서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서류들은 군·학계·사회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의해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심사결과 선정된 대체복무대상자는 자격요건에 따라 사회치안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병역의 종류는 현역복무를 기본으로 하고, 제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주변국가를 야만적으로 침략한 전범국가라는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으로 도입한 대체복무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의 대체복무제도는 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민사복무로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경우이다. 병역의무자로서 양심에 의거하여 군복무를 거부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민사복무를 할 수 있다. 민사복무분야는 정원 및 농업분야, 양로원 근무, 병원 앰블란스 기사업무, 신체장애자 보호, 공공건물 관리 및 수리, 구조 보조업무, 주방 및 세탁보조, 재생원이나 재활원 근무, 환경보호 등이다. 이러한 민사분야에 근무할 경우 일정한 자격요건과 교육을 필요로 하며, 이를 충족할 경우 해당분야에 배치된다. 민사복무 소집은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본인의 원에 의하여 소집일과 근무지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의 특성과 관심분야에 따라 복무분야를 스스로 선택한다**.

3. 이태리

현재까지 이태리는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과거 12개월이던 현역 복무기간을

** 독일의 병력규모는 동서 냉전의 종식, 통일 및 최근 유럽통합의 진전으로 전쟁위험이 감소함에 따라 통일이전 67만 명이던 병력이 2004년 현재 28만명 수준으로 감축되었다. 또한 이러한 병력 감축에 따른 잉여자원 해소를 위해 통일 이전 15개월이던 현역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2002년 9개월로 단축되었고, 민사복무기간도 통일 이전 20개월에서 2002년부터 10개월로 단축되었다. 독일은 통일 직후부터 검토 되어온 모병제 도입이 다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1990년 중순 10개월로 단축하였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전투력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사병제도를 활성화 하고 구성비율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은 무엇보다도 군규모의 감축과 과도한 병역자원의 잉여, 냉전 환경의 소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태리는 2000년에 군의 정예화화 첨단무기 사용능력 배양, 다국적군 환경에 적합한 군 조직운용을 위하여 징병제를 2007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병력도 2003년 12월 현재 36만 8천여 명에서 19만 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군 전문화 법률을 채택하였다. 현역 외에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무기간은 현역과 동일한 10개월이다. 복무분야는 공공복지, 문화, 생태학, 해외업무 및 시민보호 업무 등이다.

4. 스위스

스위스는 국민인 모든 남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민개병제하에 민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방의 주체인 민병은 단기 군사훈련을 받은뒤 평시에 생업에 종사하면서 훈련을 받다가 유사시 동원되어 국토방위를 수행한다. 대체복무제도는 1995년 대체복무법이 공포됨으로서 시행하게 되었고, 대체복무를 원하는 징집대상자는 해당 관할기관에 수시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관할기관에서는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대체복무 여부를 결정한다. 스위스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은 현역 복무기간의 1.5

배를 복무하게 하고 있다.

장관, 국회의원, 성직자, 의료요원, 경찰, 국경수비대, 우편배달원에게는 병역의무부과를 유보하고, 방위산업체근무자, 산업/수송요원, 공무원, 기자/방송요원 등은 동원을 제외한다.

병역이행 보류자 및 면제자에 대해서는 배상세 제도를 운영하여 병역의무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소득의 3%에 해당하는 배상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Ⅲ. 외국의 대체복무제도가 주는 시사점

1. 개설

외국의 대체복무제도의 특성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대체복무제도와 비교·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엄격한 징병제도를 실시하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다만 외국 대체복무제도의 한 특징으로는 대체복무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요즈음 이슈화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경우 외국의 사례, 특히 대만의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좋은 연구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역과 대체복무자들과의 상대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병역부담금제도(가칭)의 도입을 검토할 경우 스위스에서 운영하고 있

* 2006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2007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는 병역이행 보류자 및 면제자에게 부과하는 병역배상세 제도를 연구해 볼만 하다. 대체복무자의 근무형태도 대만처럼 합숙근무(내무생활)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외국의 제도가 우리의 복무 일원화 방안에 주는 시사점

한 나라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수적이며, 군사력 구성요인 중 병력은 가장 핵심적 요소이다. 또한 병역의무는 단순한 신체적, 노동력의 제공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침략 등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할 경우에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무한한 충성심의 의무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의 확보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대만, 스위스의 주요 병역제도를 병역의무 부과와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은 ① 징병검사의 병역판정요소에 학력을 반영하지 않고, ② 징병검사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입영하도록 하며, ③ 생계곤란자에 대한 병역감면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 ④ 병역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는 추세이고(1990년 15개월 → 2002년 9개월), ⑤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근거규정을 헌법인 독일기본법에 직접 규정하여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무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대만은 ① 생계곤란자에 대한 병역감면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대신에 군복무기간 증가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② 병역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현역복무기간을 단축(2004년 20개월 → 2006년 현재 16개월)하고 있다.

스위스는 ① 19세 징병검사 후 20세에 기본훈련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② 성직자, 국회의원, 장애인 등 병역복무를 유예 받거나 면제 받은 모든 사람에게 병역면제배상세를 부담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과제인 ①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제도 운영, ② 병력자원관리의 일원화, ③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때 이상과 같은 독일, 대만, 스위스의 병역제도는 참고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병역자원 감소추세를 감안하여 대체복무인력 지원을 축소하되, 국가 정책 및 경제여건, 분야별 인력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중지원분야를 선정하고, 지원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국가인력의 효율적 활용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방위산업 및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IT(정보기술), NT(나노기술), BT(생명기술), ET(전자기술) 등 첨단과학핵심기술 인력을 집중 지원하고, 산업기능원은 인력부족난이 심한 3D업종과, 전시에 군수물자 수송담당으로 제4군의 역할을 수행하는 해운/수산분야, 국민의 식량안보 산업인 농·어업분야, 그리고 전·평시 모두 군수물자를 생산·정비하는 방위산업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공익근무요원은 고령화 사회 도래와 사회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사회봉사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국가 인력활용 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IV. 결어

우리는 앞서 병역자원의 점진적 감소추세와 더불어 복무기간 단축이라는 병역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병역 환경의 변화는 병역제도의 기본 목표인 군에서 필요로 하는 병력소요의 충족이나 병력감축 계획의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어떠한 병역자원관리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현역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충원하고, 이들 중 일부를 활용하는 대체복무제도에 흘러들어가는 인력을 축소 및 조정해야 할 것인가라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두 가지 문제로 요약되는데, 병역환경의 변화에 걸맞는 병역자원관리체제의 설정과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의 축소 문제이다. 그러나 현실은 병력수급의 곤란으로 대체복무제도의 축소 및 폐지가 불가피한 가운데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된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들을 사회봉사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자발적인 봉사정신이 요구되고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회봉사 업무의 특성으로 보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먼저 병역정책의 기초와 관련된 각 입장의 대립이다. 국방부와 군, 사회 등에서는 병역 형평성, 병역기피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병역제도 기초를 강화해야 하며, 대체복무제도도 대폭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체복무자를 활용하고 있는 기관 및 업체 등은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차원에서 대

체복무제도별로 확대 및 축소에 대한 주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의경 및 경비교도의 경우 국방부는 병력수급의 곤란으로 인하여 기존과 같은 인력의 지원은 곤란하므로 대폭적인 지원 규모의 축소나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의경 및 경비교도를 활용하는 행정자치부, 경찰청, 법무부는 현역에 준하는 임무 및 기능을 수행하므로 여타 대체복무제도와 다르며 현역과 동일하게 인력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규모의 축소와 중단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단기간의 인력지원의 중단 등은 대체할 인력의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과 과다한 국가예산소요를 유발케 하므로 옳지 않다는 의견이다.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국방부 및 군 등에서는 과학기술 발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기는 하나 현재 규모보다는 대폭적인 축소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과학기술군 지향이라는 목표하에 우수한 인적 자원을 군에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방향성이야 말로 본래의 병역의무이행 차원에서도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관련 학교기관 등은 현대 국가발전의 핵심은 과학기술 개발이므로 우수 전문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지원의 축소나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공계와 자연계 분야에 대한 사회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의 상실로 인해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제도의 축소나 폐지는 해당 분야의 학생 획득을 더욱 곤란하게 함으로서 학문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체복무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현실적 주장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서 학문의 연계성 및 복무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 왔던 여타 복무제도와 복무기간 형평성을 위해 복무기간의 단축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되는 입장의 반영으로서 사회에서는 전문연구요원제도에 대한 특혜의 시각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경우 국방부, 군, 사회 등의 공통된 입장은 산업체의 인력획득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병역자원의 지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기업 경쟁력에 저해가 되며, 복무 및 선정 과정상에 병역비리 개연성이 상존하므로 폐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회 등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는 기관들은 첨단기술분야 및 3D업종 등은 활용할 수 있는 인력풀 자체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므로, 인력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산업발전 및 기술발전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므로 인력 지원의 지속을 요구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제도의 경우 군과 사회에서는 건강보험 등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영역과 폭이 확대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국가적으로 의료서비스의 비제공지역이 축소되고 있으며, 사회에서 의료인력에 대한 병역혜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 제도의 축소 및 폐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군의관보다 공중보건의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협회 등은 아직도 벽오지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는 비수혜지역이 존재하

로 제도의 축소 및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공익법무관제도의 경우 군과 사회에서는 축소나 폐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법조인력 양성 확대 등 국가시책상 법률서비스 비수혜 지역 및 대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측면에서 주장되고 있다. 실제 활용 및 배치에 있어서도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는 열악한 지역에 근무토록 해야 함에도 단순 송무업무 등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분야에도 인력이 배치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익법무관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난 후 미래의 사회지도 인력인 법조인력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나, 이러한 법조인력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상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 법률구조관리공단 등 공익법무관을 활용하는 기관은 법률서비스 수혜가 곤란한 지역 및 국민에 대한 지원이 타당하며, 현 상태에서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획득하는데 예산소요가 과다하므로 지원 축소 및 폐지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제도의 경우 국방부, 군, 사회 등에서는 병역자원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현재도 일부 불필요한 분야까지 인력이 지원됨으로 인해 병역의 형평성 및 건전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지원 축소 및 중단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근무요원 활용기관들은 행정개혁 등으로 인해 공무원인력 감축에 따른 지자체 업무를 보조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예산 절감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제도의 유지를 바라고 있다.

또한 현역으로 활용하기 곤란한 병역자원을 대상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배정하는 것이므로 제도의 폐지보다는 최소한의 인력 지원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 언론 및 NGO 등에서 종교 및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인권문제 또는 사회적 손실로 인식하고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사회의 민주화 및 인권의식의 성장으로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어 왔으며, 대만의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허용이 인식전환 및 제도 도입 요구에 대한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현재 집총거부자에 대해 실정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부과하는 대신 대체복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그러나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도입에 대한 입장과 해석의 차이로 찬반양론이 극심하게 대립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및 찬성의 구체적 입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을 살펴보면 양심의 자유는 양심실현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적극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다. 이들은 실정법에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헌법과 병역법간의 조화적 해석에 따라 대체복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수자의 인권보호로서 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세계적으로도 각국의 상황에 따라 약간 상이하게 접근되기는 하나 양심적 병

역거부를 인정하는 추세이다. 반면, 도입반대를 주장하는 측면에서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징병제를 유지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기초 군사훈련 및 예비군 복무 등의 면제는 병역의무의 평등한 공적 부담 원칙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당국가의 현실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때, 남북분단의 상황은 물론 병역기피 풍조 만연이라는 현 사회풍토상 객관적 기준의 설정이 불가능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인정시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 현행 신체기준에 병역처분을 실시하는 병무행정상의 통일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다. 사회 종교간의 문제점도 유발할 수 있다. 실제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시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시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이다. 현역복무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지적되고 있다.**

2004년 7월 15일 대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최○○)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이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이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대법관 절반이 대체복무 등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대법원은 우선 종교양심의 자유는 상대적 가치이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결코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권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법질서를

* 정주성 외, 『한국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한국국방연구원, 2003), 66-70면.

** 안석기 외, 『병역정책 연구1』(한국국방연구원, 2002), 203면.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종교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권리유보조항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또 헌법 제39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에 대해 “국가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하며 “특히 남북이 분단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국방의 의무가 보다 강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반대의 의견을 밝힌 이강국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 모두가 의견일치를 보였다. 하지만 이 대법관은 “양심의 결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는 형벌권을 양보하고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하여 비록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사실상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종교·시민단체의 대체복무 도입 요구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에 관련된 사항은 사회적 관심과 병역정책 이슈로서는 중요하지만 법률적 접근과 광범위한 연구 분야로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 조선일보, “양심적 병역 거부 유죄 확정, 개인보다 국가존립 우선”, 2004. 7. 15일자, 사회면.

**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구분별한 전과자 양산

이상과 같은 논의와 주장들을 살펴볼 때, 병역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변화하는 병역 환경에 걸맞는 합리적인 병역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군과 사회의 요구를 가급적 동시에 수용하고 충족 가능한 대체복무제도의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을 막고, 비록 소수라고는 하지만 신앙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복합된 조치로 풀이된다. 특정 종교 신자를 중심으로 연평균 752명이 입영을 기피하고 이 중 90% 이상이 징역형을 받는 등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해 보기도 전에 ‘전과자’로 낙인되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정부의 선의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007년 18일 “종교적 사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병역의무와 소수 인권 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체복무 중간에 입영을 희망하는 자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한 뒤 근무 강도가 낮은 일반 사회복무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며 복무했던 기간 만큼 감면해 준다는 방침이다. 대체복무자들의 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정해졌다. 이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보다 14개월 길다. 정부가 복무 기간을 현역병보다 늘린 것은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종교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와 관련,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내년까지 병역법개정안과 향토예비군설치법, 사회복무시행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확정된 큰 틀은 변함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국방일보 2007.09.19. 참조).

*** 김종구, 앞의 논문, 49-52면 참조.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근복 외, 병역정책론, 제일사, 2003.
- 곽용수 외, 세계 국방인력 편람, 한국국방연구원, 2003.
- 국방대학교, 안보관계 용어집, 국방대학교, 2001.
- _____, 안전보장이론, 국방대학교, 2001.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 권태영 외, 21세기 군사혁신과 한국의 국방비전, 한국국방연구원, 2003.
- 김두성, 한국병역제도론, 제일사, 2003.
- 김문성, 병무행정론, 법문사, 1998.
- 김용탁·송재천 편저, 병역제도와 실무, 계명사, 1977.
- 김형만 외, 국가 인력수급과 전망과 정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2.
- 남궁근, 행정조사방법론, 법문사, 2001.
- 나대석 외, 국방사,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4.
- 문창주, 한국정치론, 일조각, 1977.
- 법무부, 법무연감, 2000/2001.
- 병무청, 병역법령집, 2001.
- _____, 병무연보, 2002.
- 서원석·왕위, 행정윤리와 깨끗한 정부건설, 한국행정연구원, 1998.
- 안해균, 한국행정체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 예관수, 군사학대사전, 세문사, 1974.
- 오동열, 각국 병역제도 비교연구, 고려문화사, 1990.
- 오창훈, 한국사, 일신각, 2001.
- 유지대,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7.
- 이민호, 부정부패는 가라, 한국능률협회, 1999.
- 이병철, 현대 행정학 이해, 울산대학교, 1996.
- 이선호, 국방행정론, 고려원, 1985.
- 이종인 외, 지식정보시대의 국방인력 발전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003.
- 이한빈 외,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 한국행정문제연구소, 1969.
- 정주성 외, 병무비리 근절대책 효과측정 및 병무평가 모델개발, 한국국방연구원, 2000.
- _____, 21세기 병무행정 비전 및 정책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000.
- 조영재, 한국의 서정쇄신론, 율성사, 1980.
- 최병대·이종원, 청렴성 측정을 위한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I),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
- 한국행정학회, 통일이후의 한국의 행정조직 및 지방행정체제의 설계, 한국행정연구원, 1996.
- 황성돈·황성흠, 반부패 길라잡이, 국무조정실, 2001.
- 홍두승, 한국군대의 사회학, 나남, 1993.

2. 학회지, 논문, 기타자료

- 고건, 서울시 부패방지 시책 세계에 알린다, 서울시정뉴스 220-1 제9차 국제반부패회의 초청사례 발표문, 2000.
- 국방부, 병무비리 척결대책, 1999.
- 김병조·김석용, 병무비리 분석과 병역제도 개선방안, 교수논총 제18집, 2000.
- 김영종, 지방공무원 부패방지 대책, 2000.

문병민, 우리나라 병역의무 형평성 제고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1998.

문채봉, 선진형 인력구조 발전, 한국국방연구원, 2003.

박영호, 평화변영정책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통일연구원, 2003.

병무청, 병무행정 이행과정 안내, 2001.

_____, 병역의무는 이렇게, 2001.

손인섭, 21세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주변환경,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3

안석기, 건전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한 문화적 접근, 한국국방연구원, 2002.

양재성,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3.

유정렬, 독일·베트남·에멘의 군사통합 사례 연구,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정정민, 한국병역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2002.

조문상, 병역제도 개선 논의에 관한 고찰 (국회보 통권 제426호), 국회사무처, 2002.

최일권, 병역자원과 병역 형평성간의 상관관계로 본 대체복무제도운영, 국방대학교, 1998.

통일연구원, 통일문제이해, 2004.

한국국방연구원, 병역제도 발전방향 정립연구, 1989.

_____, 세계 국방인력 편람, 2003.

_____, 지식정보시대의 국방인력 발전방향, 2003.

3. 외국문헌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02·2003,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2002)

· Barry, Buzan. Ole Wever. Jaap de Wilde(1998). Security A New Framework: The H. W. Wilson Co.

· Edmonds, Martin(1990), Armed Service and Society, Colorado: Westview Press.

· Hartely, Keith. Todd Sandler(1995), The Economic of Defence.

· Lawrence, Philip K(1997). Modernity and War: The Creed of Absolute Violence. London: Macmillan.

· Aschinger, G., Milizsystem der Sshweiz-Oekonomische Aspekte, in : Guenter Kirchoff, Handbuch zur Oekonomie der Verteidigungspolitik, 1986.

· Beck, A. ; Prinz, A., Wehrpflicht-oekonomisch betrachtet, Wirtschaftsdienst, 1994/IX.

· Edmonds, Martin., Armed Services and Society, Colorado: Westview Press, 1990.

· Fiedman, M., Why not a Volunteer Army?, in: S. Tax(edit.) The Draft, Chicago 1966.

· Fienberg, Stephen E., Randomization and social affairs: The 1970 Draft Lottery, in : Science, Vol. 171, 1971.

· Guibernau, Monsterrat, Nationalisms: The Nation-State and Nationalism

- in th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 polity Press, 1996.
- Haltiner, Karl W., "The Definite End of the Mass Army in Western Europe?", *Armed Forces & Society*, Vol. 25, No. 1.(Fall), 1998.
 - IISS(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02~2003*,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John O. O'Neal, *Budgetary Savings from conscription and burden sharing in NATO*, in: *Defense Economics*, Vol. 2, 1992.
 - Neubauer, G., *Wehrgerechtigkeit als Teilproblem einer gerechten Steuerpolitik*, in: *Finanzarchiv*, N.F., Nr.42, 1984.
 - Richard P. Hallion, *Storm over Iraq*, Washington D.C. :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1992.
 - Segal, R. David, "U. S. Civil-Military Relat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Sociological View" in Don M. Snider and Miranda A. Carlton-Carew eds., *U. S. Civil-military relations In Crisis or Transition*, Washington, D. C.: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995.
 - Schaefer, W.: Schleicher, M., *Zur Frage der volkswirtschaftlichen Opportunitätskosten einer allgemeinen Dienstpflicht*, Hamburg 1996.
 - Schuette, C., *Oekonomische Aspekte der Wehrpflicht, Wirtschaftsdienst* 1991/II.
 - Sjaastad, L. :Hansen, R. W., *The Distributive Effect of Conscription : Implicit Taxes and Transfer under the Draft System*, in : Kenneth E. Boulding : Martin Pfaff(edit.) : *Redistribution to the Rich and to the Poor*, 1972. J